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23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이건태·전현희·박지혜

박지원 • 김승원 • 민형배

김동아 • 박균택 • 강득구

김문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등의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검사가 위법하거나 부실한 기소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법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고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위법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으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공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위험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체에 관하여 수사가 되어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때에는 다시 기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공소권이 적법절차와 정제된 형태로 행사되 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329조).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9조(공소기각과 재기소 등) ① 실체에 관하여 수사가 되어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때 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행 혂 개 정 아 제329조(공소기각과 재기소 등) 第329條(公訴取消의 再起訴)公訴 取消에 依む 公訴棄却의 決定 ① 실체에 관하여 수사가 되어 이 確定된 때에는 公訴取消 後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제327조 그 犯罪事實에 對한 다른 重要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 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공소를 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에 限하 여 다시 公訴를 提起할 수 있 제기할 수 없다.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다. 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 우에 한정하여 다시 공소를 제 기할 수 있다.